

# '93년은 낙농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위생유질차등 가격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낙농진흥법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새해부터 시행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차등액의 기준을 낙농가의 입장으로는 가능한 높이려 할 것이며 그것으로 원유의 가격인상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 할 것.  
유업체도 역시 이를 빌미로 제품가격인상을 노리고 있어서 결국 낙농가와 유업체는 목적이 다른 동의를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상황으로 추진될 것.

## 이 만 재

서울우유협동조합 지도부장

1993년은 우리나라 낙농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25년전인 1967년에 제정된 낙농진흥법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모습으로 개정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며 둘째로는 우유의 수입개방이 현실화된다는 점이 또다른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낙농진흥법의 개정문제는 지난 1984년부터 거론된 집유일원화를 계기로 출발하여 8년동안 연구와 논란이 계속된 끝에 지난해에 행정부처간 협의와 두번에 걸친 입법예고를 거쳐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마침으로서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국무회의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뒤 국회에 개정 결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새해 상반기에는 이와 같은 개정절차를 무난히 마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진흥법의 개정은 ①집유일원화의 실현 ②검사제도의 재정비와 표준화 ③원유가격체계 및 결정제도의 개편 ④원유수급 안정장치의 확립 ⑤수입개방의 효과적 대응장치 구축 ⑥낙농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중앙 조절기구의 설립 등 수많은 새로운 낙농제도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산업 전체의 구조적 개편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낙농의 중대한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기획하고 추진할 기구로서 낙농진흥사업회라는 낙농중앙조절기구가 가장 먼저 발족될 것이 확실하며, 그 기구에서 가격 결정장치와 검사체계를 구축한뒤 집유일원화를 시행하게 될 것이 일반적인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낙농진흥사업회의 설립준비위원회

가 법개정 직후 발족되고 이어서 구체적 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등의 하위법규 제정과 실무를 추진할 사무국의 개설등도 새해 상반기에 실현되리라 예상된다.

낙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낙농진흥법의 개정 이후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역시 가격결정 제도의 체계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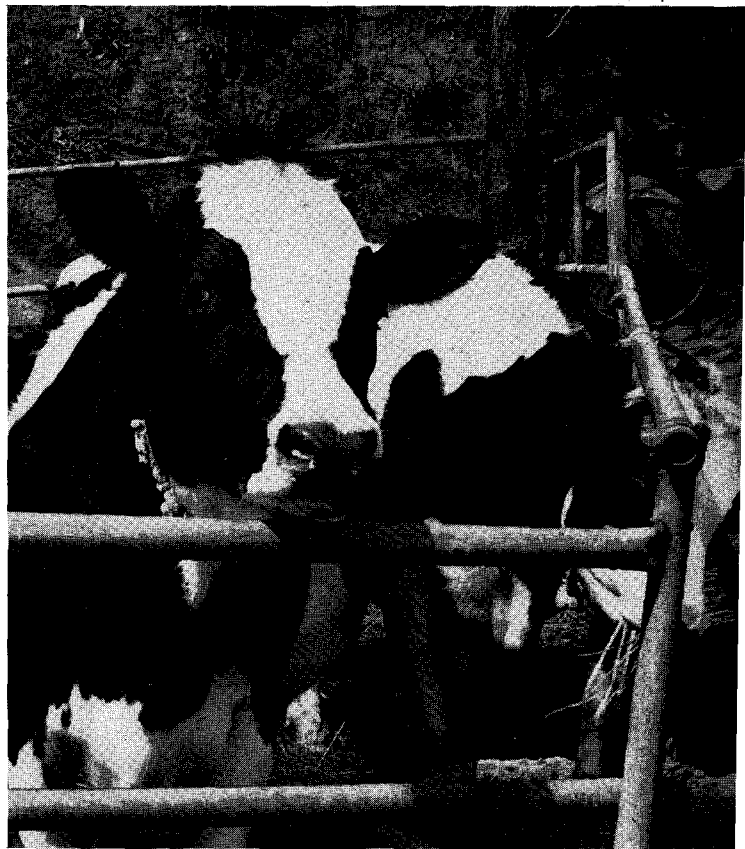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유의 위생유 질차등가격제도와 원유의 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은 낙농가의 낙농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들로서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위생유질차등 가격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낙농진흥법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새해부터 시행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차등액의 기준을 낙농가의 입장으로는 가능한 높여야 할 것이며 그것으로 원유의 가격인상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업체도 역시 이를 빌미로 제품가격인상을 노리고 있어서 결국 낙농가와 유업체는 목적이 다른 동의를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상황으로 추진될 것이나 정부의 입장으로는 물가안정 기조위에서 최소한의 등차폭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리라 본다.

한편 집유일원화의 실현에 따른 낙농생산자 단체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특히 기존 낙협 또는 축협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납유하던 낙농가와 일반유업체에 납유하던 낙농가 사이의 갈등과 파별이 쉽사리 조정,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낙농가들의 지역조직의 구조가 주로 납유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같은 지역에 여러 낙우회가 구성된 지역은 하나의 조합으로 집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과 충돌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낙농가들이 이러한 기회야말로 협동심을 발휘하여 서로가 지난날의 분열된 힘을 한데 모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협동조합으로 일치 단결함으로써 낙농가의 거



래 상대자인 유업체와 대등한 입장의 힘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적인 사소한 사리사욕을 버리고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떨쳐 버림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유의 수입개방이 새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우유의 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은 나돌고 있으나 그 가능성을 따져보면 대체로 이렇다.

첫째, 우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이므로 외국에서 생산하여 운송, 수입통관, 국내유통, 배송등의 기간을 따지면 최소한 가장 가까운 일본 북해도에서 수입한다해도 5-6일은 족히



소요될 것이며 유효기간이 1-2일밖에 남지 않은 시유를 우리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입은 불가능하다.

둘째, 멸균유를 수입할 경우 이는 법적 유효기간이 6주이므로 기간상으로는 수입될 수도 있으나 멸균유를 가격경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지역은 뉴질랜드, 호주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6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적도지역을 거치는 측과 비용부담으로 상업적 가치는 감소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우유나 멸균유를 이와같이 상업적으로 장거리 수출입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지역적으로는 덴마크등이 유럽지역내의 나토군에 수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나 이 경우는 EC역내 거래로 엄격히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거래는 아닌셈이다.

셋째, 만일 그래도 수입하려는 경우를 대비한 대응조치는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멸균유의 HS 세분류로 이를 A.A.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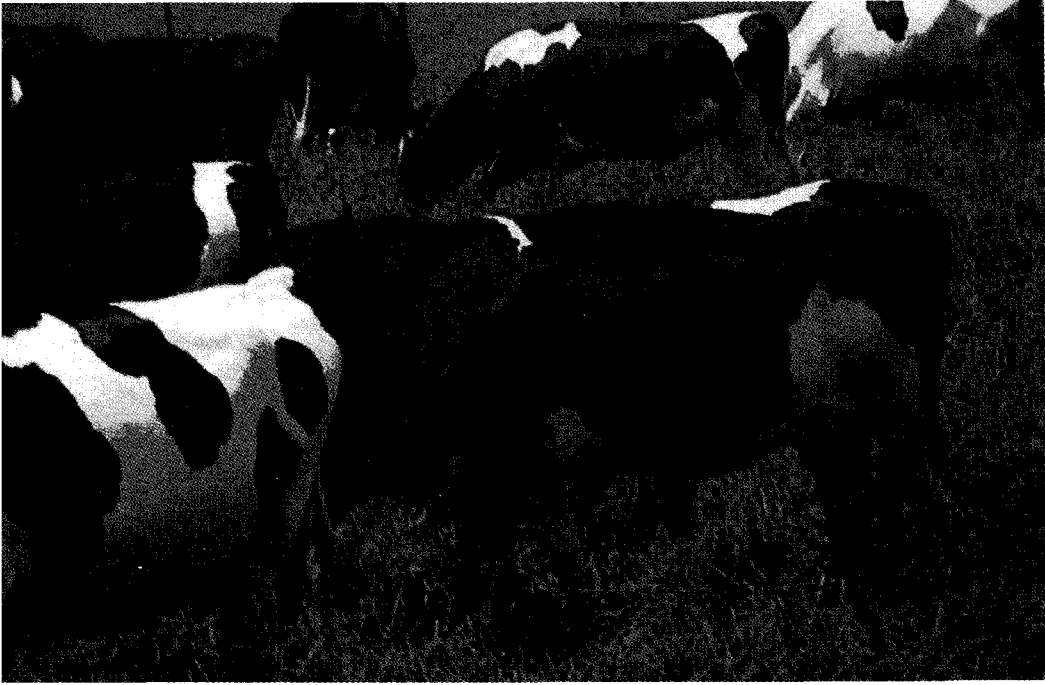
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② 우유의 경우(멸균유도 해당) 수출국의 생산자 보조금과 수출보조금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나 수입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 가격경쟁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이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보조금을 60-90% 지원하므로 이를 상쇄시키면 수송과 무역비용의 추가부담 등으로 국내가격경쟁력이 없어짐.

③ ②의 경우가 강구되지 못한채 수입되었을 경우 보조금에 의해 수입된 물품으로 국내 낙농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이므로 덩핑판정과 동시에 산업피해 구제조치로 대응하는 방법.

④ 낙농자조금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신선한 우리나라 유제품과 시유의 우수성이 수입된 유제품보다 질적으로 월등함을 홍보하는 방법.

⑤ 수입된 유제품이 단 1% 미만의 국내시



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국내 낙농생산조절 제도의 즉각 도입으로 GATT 규정에 의한 즉각 수입규제조치하는 방법.

-이경우 이번 개정된 낙농진흥법에는 계획 생산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모든 선진 낙농국들도 이를 시행하고 있어서 가장 확실한 수입규제 방법이 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수입규제 방법도 낙농가들이 일치단결하여 일사불란한 협동정신을 발휘해주어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1993년도에도 지금까지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우유는 대체로 생산이 192만톤, 수요가 206만톤 정도로서 14만톤의 부족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요의 약 6~7%가 부족되는 셈이다. 장기적(1996년까지) 전망으로도 생산은 연간 3~4% 수준에 머무르고 수요는 5~6% 수준으

로 예측되고 있어 부족분의 폭은 점차커지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낙농가수는 1992년도에 연초대비 연말의 감소추세가 1991년도의 10%에 비하여 6%수준으로 감소 속도가 다소 늦추어졌고 젖소두수도 1992년도 하반기부터 정체상태에서 약간 상향곡선으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도태율도 1991년의 30%대에서 1992도에는 20%대로 대폭 감소되고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1993년도의 생산증가는 1992년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최근 젖소송아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낙농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낙농포기능가가 다시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감소현상을 빚을 수 있다. '93년도의 전국의 한우, 젖소 등 총 소사육두수가 250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보아 소값파동을 조심스럽게 걱정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보아 매우 불안정한 생산상황이 아닐 수 없다.